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4352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참가행정청	○○○○○장관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215,925,14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취득세 등 33,692,9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경위

1) ◯◯광역시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 ◯◯구 B 일원 21,460㎡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 2. 9. 이를 고시하였다(◯◯광역시 고시 C).

2) 원고는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9. 4. 8.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3) 피고는 2010. 6. 1.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원고가 A주택재개발정비구역(◯◯ ◯◯구 D 일원 23,109.7㎡)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을 개선·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2010. 6. 4. 이를 고시하였다(◯◯광역시 ◯◯구 고시 E).

4) 피고는 2017. 3. 28.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광역시 ◯◯구 고시 F).

	신설			용도폐지			
	종류	규모(㎡)	관리청	종류	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정비기반시설	도로	1,445	◯◯구청	도로	2,209	2,209	1,796
	공원	1,185					
	주차장	165					
	소계	2,795					

나.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

1)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정의 개정 경과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광역시세 감면 조례」(2011. 1. 1. 「○○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1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 조례는 ○○광역시조례 제4880호로 제정된 「○○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이하, '제정 조례'라 한다)가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2)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에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사항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종전 조례 제19조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제74조 제3항 본문(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에 규정하였고, 이후 해당 조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2013. 1. 1. 법률 제11618호),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2015. 12. 29. 법률 제13637호) 각각 개정되었다.

3) 그런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지방세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지 못하고 그중 100분의 75만 경감 받게 되었다.

다.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2018. 4. 19.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상취득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유상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액[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경되는 100분의 75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187,215,260원, 지방교육세 18,720,820원, 농어촌특별세 9,989,060원 합계 215,925,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2021. 7. 30. 공사를 완료한 뒤 2021. 8. 13. 피고로부터 도시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았고, 도시정비법 제97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상 용도폐지되는 도로 2,209㎡ 중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정해져 있는 1,796㎡ 부분, 이하, '이 사건 무상취득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유상취득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인 2021. 8. 13.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4) 원고는 2021. 10.경 이 사건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액 117,925,360원[과세표준 3,369,296,000원에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35)을 곱하여 산정]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2]에 따라 감경되는 100분의 75를 제외한 나머지인 취득세 29,481,340원, 지방교육세 2,526,970원[3], 농어촌특별세 1,684,640원[4] 합계 33,692,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1. 10. 25. 원고가 2010. 6. 1.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부칙」(○○광역시조례 제4880호, 2011. 1. 1., 이하, '제정 조례 부칙'라 한다)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이하,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조례 제19조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등 215,925,140원(이 사건 유상취득 부동산) 및 33,692,950원(이 사건 무상취득 부동산)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12. 24. 구 지방세기본법(2021. 12. 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

2)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20. 1. 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17조 제3항에 따라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산식인 '과세표준 3,369,296,000원 × 1,000분의 15(= 1,000분의 35 - 1,000분의 20) × 100분의 20 × 100분의 25'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산식인 '과세표준 3,369,296,000원 × 100분의 2 × 100분의 25 × 100분의 1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취득 부동산에 관한 심판청구는 2023. 5. 1.에, 이 사건 무상취득 부동산에 관한 심판청구는 2023. 5. 15.에 각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대법원 94다31419 판결, 대법원 94누5502 판결, 대법원 95다44917 판결, 대법원 97누1396 판결, 대법원 96다52984 판결, 대법원 2008두15039 판결에 따르면, 조례에서 특별한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고 해당 조례 시행 당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이후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종전 조례 제19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감면요건('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을 정하고 있고, 원고는 종전 조례 제19조가 시행 중이던 2010. 6. 1.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원인행위를 하였고 종전 조례 제19조가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신뢰하였으며, 제정 조례 부칙 제5조는 종전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정 조례 부칙 제5조,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종전 조례 제19조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및 참가행정청

다음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종전 조례 제1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종전 조례 부칙 제2조,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의2에 따르면 종전 조례는 2010. 12. 31.까지만 적용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는데, 원고는 종전 조례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인 2018. 4. 19.과 2021. 8. 13.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종전 조례 제1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조례 제19조에서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세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종전 조례 제19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중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종전 조례에서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세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종전 조례 제1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과 이 사건의 쟁점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므로(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2018. 4. 19.(이 사건 유상취득 부동산)과 2021. 8. 13.(이 사건 무상취득 부동산) 각각 성립하고, 해당 취득세에는 2018. 4. 19.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 및 2021. 8. 13.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조례 제19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2011. 1. 1. 폐지되었고, 제정 조례 부칙 제5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는지, 아니면 경과규정(제정 조례 부칙 제5조,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조례 제19조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과 종전 조례 제19조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이 적용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과규정(제정 조례 부칙 제5조,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종전 조례 제1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제정 조례 부칙 제5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제정 조례는 「○○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가 2013. 7. 29.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제정 조례 부칙 제5조 역시 2013. 7. 29. 폐지되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제정 조례 부칙 제5조는 이미 실효된 상태였으므로, 제정 조례 부칙 제5조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전 조례 제19조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제74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요건 하에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되기에 앞선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었고, 그와 함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10. 12. 27.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3조의2의 개정 취지 및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제3조의2의 관계(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의 부제는 '일반적 경과조치'인 반면 제3조의2의 부제는 '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제3조의2에 규정된 조례에 관하여는 제3조의2가 제3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를 종합하여 보면, 종전 조례 제19조에 정해진 취득세 면제는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의2에 따라 종전 조례의 효력이 종료된 2011. 1. 1.(종전 조례의 폐지일)까지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종전 조례 제19조가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종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조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종전 조례 제19조가 2011. 1. 1.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전 조례 제19조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제74조 제3항 본문(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에 규정하였으므로, 종전 조례의 폐지를 두고 조세법령 또는 조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이후 취득세 면제의 기한을 2015. 12. 31.까지 및 2016.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가 2016. 12. 27.에 이르러서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었다).

3) 원고의 종전 조례 적용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201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6. 1. 당시 종전 조례 제19조가 계속하여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거나 그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가) 종전 조례 부칙(◯◯광역시조례 제4363호, 2009. 12. 28.) 제2조는 종전 조례를 2010. 12. 31.까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또한, 종전 조례 제19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장래의 특정한 시기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종전 조례 제19조와 같이 특별한 감면요건('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감면요건이 없는 경우보다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문언이 특별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특별한 감면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감면요건이 없는 경우보다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종전 조례 제1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

판사 김○○

판사 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별지1

이 사건 유상취득 부동산의 표시

과세대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과세대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과세대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과세대상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별지2

관계 규정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농어촌특별세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2011. 1. 1.「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인천광역시조례 제4363호, 2009. 12. 28.>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서 생략)

■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2013. 7. 29.「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 칙 <인천광역시조례 제4880호, 2011.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세 조례」 및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세 조례」 및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부 칙 <인천광역시조례 제5264호, 2013.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구 지방세기본법(2021. 12. 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보통세

가. 취득세

2. 목적세

나. 지방교육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끝)